

# 환경관리질의응답

## 인허가 신고사항

**Q** 당사에서 테스트용 소성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인허가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료는 경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본 소성로가 들어서기 위하여 소형으로 재작하여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관할기관에 신고를 하고 작업을 해야되나요? 그리고 방지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되는지요?

**A** 제조사설이 아닌 연구실험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조[별표3] 규정에서 정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악취배출시설 규모산정 의뢰

**Q**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와 관련하여 악취 배출시설 종류별 시설 규모 기준에 관하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악취 배출시설 37. 금속, 금속제품, 기계, 장비, 기구 및 그 밖의 제품 등의 표면처리시설에서 시설규모 기준에 용적 1m<sup>3</sup> 이상의 도금, 열처리, 탈지, 산알카리 처리, 화성처리공정을 포함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시설규모 용적 1m<sup>3</sup> 이상은 위 시설 전체의 용적 합계를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동종시설(예 : 탈지)의 용적 합계만을 나타내는 것인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A** 규정된 시설규모의 기준 미만의 공정 또는 시설로서 동일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동종 공정 또는 시설이 설치되어 공정 또는 시설의 합계로 합산되어 총규모가 당해 항목에 규정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정 또는 시설은 악취배출시설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Q** 화학제품을 만드는 공장으로 기초화학물인 염산을 저장탱크(30m<sup>3</sup>×2set)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대기 특정유해물질의 해당여부에 해당되어 허가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용적 50m<sup>3</sup> 이상의 유·무기산 저장시설은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으나 질문 내용의 시설은 대기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시설이라도 저장시설은 이를 합산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신고 or 변경신고 유무

**Q** 질의 1. 기존 대기4종사업장으로 아스콘제조를 하는 사업장에서, 동사업장 동부지에 레미콘제조시설이 추가로 신설될 경우, 설치신고를 하여야하는지? 변경신고를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기존 : 아스콘시설 오염물질배출량 8.2t / 레미콘시설 추가시 오염물질배출량 합계 9.0t)

질의 2. 동 아스콘시설을 폐쇄하고, 더 큰규모의 아스콘시설을 설치할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변경(폐쇄)신고 및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A** 질의 1. 제조사설의 신설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배출구가 증가되는 경우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의 2. 단순하게 기존의 배출시설만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에 해당하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모두 폐쇄하고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신고에 해당합니다.

※ 자세한 변경신고 대상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19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누출검사

**Q** 누출검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의 1. 누출검사 중 저장물질이 있는 지하매설저장시설은 기상부, 액상부의 시험법이 있는데 기상부의 시험은 부속배관시험이고 액상부의 시험은 누출량 시험법입니다. 그럼 저장물질이 있는 지상저장시설은 액상부시험만 하는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단)지상저장시설에 연결된 배관은 모두 지상배관입니다.

질의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환경부 고시 제2005-124호)에서 제7조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사유 중 제3항 1호 “관리대상시설이 콘크리트나 철제구조물 위 등에 바닥면으로부터 떨어져 설치되어 상시 육안으로 오염물질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문구 중 “콘크리트나 철제구조물 위 등에”라는 말이 지상저장시설이 땅으로부터 올라온 콘크리트기초위에 지상저장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면제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의 3. 법 제13조(토양오염검사) 제3항 문구 중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에 한하여 실시한다.”에서 땅의 구체적인 의미가 궁금합니다. 지표면보다 50cm이상 높은 기초는 땅으로 볼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의부탁합니다.

**A** 저장물질이 있는 지상저장시설의 누출검사는 저장물질이 있는 지하매설저장시설의 검사방법에 따라 기상부 및 부속배관의 누출시험과 액상부의 누출시험을 각각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콘크리트 등의 기초위에 저장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누출검사 대상입니다. “땅에 붙어 있어 누출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의 의미는 저장시설이 바닥에 붙어 있어 바닥면에서의 누출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토양오염검사의 면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반개량 공사시 발생된 슬라임 재활용

**Q** RJP(Rodin Jet Pile Method)공법으로 지반개량 공사시 발생되는 슬라임(일부토사+시멘트+률)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1. 슬라임이 건설폐기물이라면 14가지 건설폐기물 종류 중 어떤 종류로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건설 오너인지요? 건설폐토석인지요?

질의 2. 슬라임을 성토재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수분 함량 85%이하로 자연건조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꼭 탈수건조시설을 설치하여 건조후 재활용 해야 하는지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꼭 중간처리하라는 규정이 있는지요?

질의 3. 건조한 슬라임의 수분함량이 85%이하라고 증명 할 수 있는 별도의 시험방법이 있는지요? 별도의 시험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요?

질의 4. 공공공사 현장으로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분리발주하고, 배출자 신고를 발주자가 하였다면 슬라임에 대한 보관

및 중간처리 규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시 처벌은 누가 받는지요? 배출자 신고를 한 발주자 인지요? 아니면 원도급자인 시공사인지요?

**A** 질의 1, 2. 건설공사장의 지반보강용 등으로 사용 한 슬라임은 건설폐기물 중 오니에 해당되며, 오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제5호 라목(2)의 규정에 의거 수분함량 85%이하로 탈수, 건조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허가 또는 승인받은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슬라임을 굽착할 때 폐토사와 분리가 불가능하여 폐토사의 일부분으로 배출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서 정하는 중간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여 성토용, 복토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3. 또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분함량에 대한 시험방법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 제4장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수분 및 고형물’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습니다.

질의 4.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습니다.

### 분리발주 대상

**Q**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관련 건설폐기물량이 100톤이상일 경우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및 부칙 2항의 (건설폐기물용역의 발주에 관한 특례)조건에 대하여 기계약된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 현기준을 적용하여 분리발주를 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시행일을 기점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는것인지?

**A**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건설공사에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중 위탁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06. 12. 31일 까지는 500톤)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공사와 건설

# 환경관리질의응답

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사의 발주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을 접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향후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 관련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식적인 결재경로를 거쳐 문서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립쓰레기

**Q**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회사입니다. 매립쓰레기를 훈합물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매립쓰레기를 선별하려고 하는데 저희 회사가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고 또한 선별(스크린)작업도 저희 회사가 작업을 하여도 분리발주에 저촉되지 않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만 ...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소에서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되어 분리·발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사업장일반폐기물분리·선별은 배출자가 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 종류 및 처리방법

**Q** 건설산업기본법제2조4호에 해당하는 토목공사(도로개설공사)중 지하에서 과거에 매립된 오니(토사일부혼재)가 발견되어 분석한 결과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질의 1. 건설공사중 지하발견된 위 내용과 같은 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어디에 적용 되는지?

질의 2. 처리시 폐기물의 종류는?

질의 3. 처리방법은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장과 최종처리시설 또는 허가된 선별, 훈합 재활용복토시설중 처리가 가능한 시설은?

질의 4. 매립된 폐기물은 어느 범위까지 처리하여야 하는지?

**A** 과거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이 건설공사과정에서 발생된 경우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분리·선별 결

과, 당초 매립지에 생활폐기물과 함께 매립되었던 사업장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 정하는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과 분리·선별이 곤란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생활폐기물 중 분리·선별된 가정쓰레기 및 일반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리·선별된 건축폐재 등 폐토사류 및 분리·선별이 곤란한 폐기물은 건설페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며, 분류된 폐기물은 그 종류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표 1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합니다.

## 유독물 변경등록

**Q** 질의 1. 유독물변경등록 - 변경등록사항증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100분의 50이상의 증가는 취급량의 증가가 아니고 시설만의 증가인지요?

질의 2. 유독물변경신고 - 변경신고사항증 사업자의 변경(법인의 대표자변경을 제외한다)에서 일예로 사업체의 대표이사의 변경(김기동에서 박철수로)도 해당되는지요?

**A** 질의 1. 유독물 보관·저장업의 경우는 보관 또는 저장시설이 100분의 50 이상 증감되는 경우에만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취급량의 증가는 변경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아닌 개인 유독물영업자의 경우에 대표자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약취에 관해

**Q** 모든 환경인허가는 선신고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취 같은 경우 이론적으로 계산하기가 힘들어 축정업체에 실측 용역을 주어 성적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실측을 하기 위해선 일단 기계들이 돌아가고 방지시설이 가동이 되어야 실측이 가능한데 이럴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반사항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에서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7조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할 경우 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질의 내용은 위반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 배출시설 사용여부

**Q** 당사의 시설들은 현황은 1. 회전로(배출시설) - 200m<sup>2</sup> 여과집진시설, 세정식집진시설(방지시설), 2. 큐풀라(배출시설) - 450m<sup>2</sup> 여과집진시설, 세정식집진시설(방지시설)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번 방지시설에 약간의 결함이 있을 경우 2번 방지시설에 연결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지요? 1. 2번을 동시에 가동을 한 적은 한번도 없거든요. 계속 이렇게 하는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수리하는 동안만 했으면 하는데요, 만약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요?

**A**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및 효율에 문제가 없다면 제 시내용과 같이 연결가능하며,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아야 하므로 관련자료를 갖고 관할행정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1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자체개선계획서를 관할행정기관에 제출하고 개선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초과 배출에 따른 행정처분은 받지않게 되고, 초과오염물질배출에 따른 부과금만 부과받게 됩니다.

## 변압기 절연유 처리방법

**Q** 당사에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당사 내부 변전실의 변압기 절연유를 사용기간이 오래되어 교체하려고 하는데 교체된 절연유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재활용? 고온소각인지?  
(교체량은 약 5통 가량 예상 됨.)

**A** 폐변압기에서 발생된 폐절연유의 성분분석 결과 PCB성분을 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 중 액체상태의 것에 해당되며, 그 외 PCB성분을 함유한 액체상태 외의 것은 PCB 성분을 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경우 지정폐기물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로 분류되며,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 하여야 됩니다. 또한, 폐절연유의 성분분석 결과 PCB가 지정폐기물 기준 이내로 검출되더라도 기름성분을 5%이상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지정폐기물인 폐유로 분류되며 폐유처리업체(재활용포함)에 위탁처리 하면 됩니다.

## 건설폐기물 재활용

**Q** 당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내용을 질의코져 합니다. 질의 1. 철거현장(배출장소)에 파쇄기를 설치후 파쇄된 순환골재는 인허가된 다른장소에 운송하여 성토, 복토의 재활용 가능여부?

질의 2. 위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허가된 다른 장소에 운송,아직후 파쇄기를 설치하여 생산된 순환골재의 성토, 복토의 재활용 가능여부?

**A**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당해 현장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자가 직접 설치승인을 받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중간처리기준(최대지름 100mm 이하, 유기이물질 함유량 1% 이하)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를 당해 현장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으나 다른 공사현장 또는 장소에서 재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배출자가 당해 공사현장에서 직접 처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또는 신고된 자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